| 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 | 보 도 자 료 |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하나된 열정 하나된 대한민국 |
|---|---|---|

**2017년 11월 15일(수) 석간부터**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11. 15.(수) 오전 1시 이후 보도 가능)

| 배포일시 | 2017. 11. 14.(화) | 담당부서 | 통상법무과 |
|---|---|---|---|
| 담당과장 | 신정훈 과장(044-203-5770) | 담 당 자 | 장정주 사무관(044-203-5771) |

# WTO 한-미 유정용 강관 반덤핑 분쟁 주요 쟁점에서 한국 승소

□ 세계무역기구(WTO)는 11.14.(화) 16:00(제네바 시간), 미국이 2014년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부과한 반덤핑관세 조치*는 세계무역기구(WTO) 협정 위반이라는 취지로 **한국이 주요 쟁점에서 승소한 패널보고서를 공개 회람**했다.

* 조치 개요: 미국 상무부는 '14.7월 현대제철, 넥스틸, 세아제강 등에 9.9%~15.8%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고 '17.4월 연례재심에서 덤핑률을 최고 29.8%로 상향조정함

<유정용 강관 대미(對美) 수출 현황>

| 수출 기간 | '14년 | '15년 | '16년 | '17년1~9월 |
|---|---|---|---|---|
| 수출 금액 | 1,404백만 달러 | 262백만 달러 | 270백만 달러 | 824백만 달러 |
| 수출 물량 | 1,477천 톤 | 321천 톤 | 441천 톤 | 788천 톤 |

○ 세계무역기구(WTO) 분쟁해결 패널은 미국이 구성가격*에 의한 덤핑률을 산정하면서 우리 기업의 이윤율이 아닌 다국적 기업의 높은 이윤율을 사용해 덤핑마진을 상향조정한 것이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위반된다고 판정하는 등, **덤핑률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쟁점에서 우리의 손을 들어줬다.**

* 미국 상무부는 한국산 유정용강관의 대미(對美) 수출가격과 비교가능한 우리 내수가격이나 제3국 수출가격이 없어 상무부가 계산한 구성가격(Constructed Value)으로 덤핑률을 산정함

- 구성가격(CV) = 제조원가(COM) + 판매관리비(SG&A) + 이윤(Profit)

○ 다만, 관계사거래, 제3국 수출가격 불인정, 의견제출기회 미제공 등 미국 상무부 반덤핑 조사과정상의 **일부 쟁점에 대해서는 우리측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.**

- 상기 쟁점에 대해서는 법리 검토 및 업계·전문가 등과 협의를 거쳐 **상소 여부를 결정**할 예정이다.

□ 이번 판정결과에 대해 분쟁당사국은 패널보고서 회람 후 60일 내에 상소할 수 있으며, 상소 결과는 상소 후 약 3개월* 후에 회람한다.

* WTO 협정상 설정된 시한과 달리, 실제 상소기구 사정에 따라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음

□ 이 패널 판정내용이 확정*되고 미국의 이행절차가 완료되면 현재 부과되고 있는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대한 반덤핑 조치가 종료되어 **우리 제품의 대미 수출여건 개선에 이바지**할 것으로 기대된다.

* 양당사국이 동 패널보고서에 대해 상소하지 않는 경우, 회람 후 60일 내에 보고서가 채택 및 확정되나, 상소가 진행되는 경우 상소결과 도출 후 분쟁내용이 확정됨

○ 또한 미국 반덤핑조치의 위법성을 확인한 이번 패널 판정은 최근 확산되고 있는 **보호무역조치를 견제하는 역할**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
□ 정부는 우리 기업에 대한 주요 교역상대국들의 부당한 **수입규제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(WTO) 제소를 포함, 앞으로도 적극 대응**해 나갈 계획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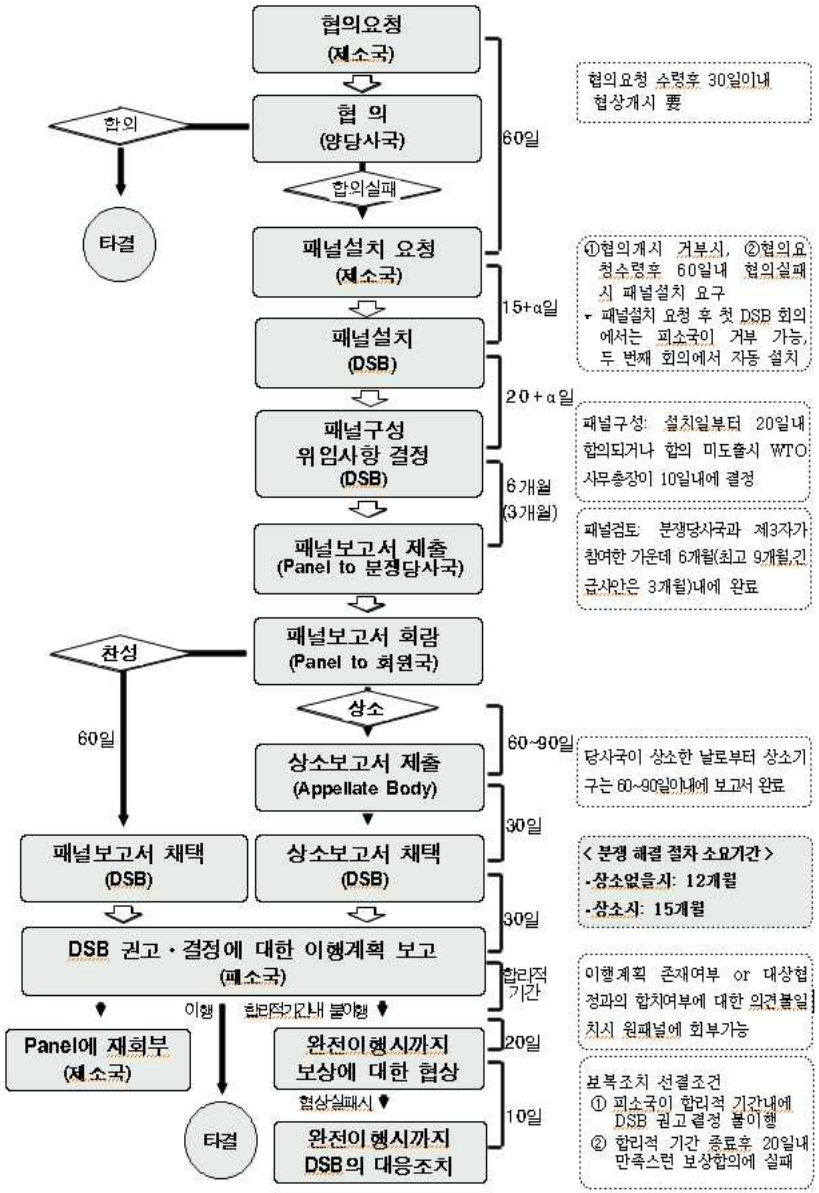
【붙 임】 1. WTO 분쟁해결절차도
2. 분쟁진행경과
3. 패널 최종보고서 상세 결과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법무과 장정주 사무관(☎ 044-203-5771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최미화 / 홍보담당관 / 2017-11-15 09:47:15

## 붙임 1 WTO 분쟁절차도




## 붙임 2 분쟁진행경과

### 1. 미측 조치 주요 내용

○ '14.7.11. 美 상무부는 한국산 유정용강관(Oil Country Tubular Goods; OCTG)에 고율(9.89~15.75%)의 **반덤핑관세 부과 최종 판정***

* 현대제철(15.75%), 넥스틸(9.89%), 세아제강·휴스틸 등 기타업체(12.82%)

- 한국산 제품은 국내수요가 없어 생산량의 대부분(98%)을 미국으로 수출하며, '13년 기준 대미 수출은 894천톤(8.17억불) 규모
- 미국내 반덤핑 조사대상 9개국 제품 전체 수입량(1,598천톤) 중 56% 차지

○ 덤핑률 판정 이후 국내업체들은 덤핑률만큼의 Deposit을 납부하고 수출중

### 2. 주요 경과

○ '14.12.22. 우리 정부, 美측의 조치를 WTO 제소(양자협의 요청)

- '15.1.21. 양자협의를 했으나 합의 실패

○ '15.3.10. 패널설치 요청, '15.3.24. 패널 설치

○ '15.7.14. 패널 구성

* John Adank(의장, 뉴질랜드), Abd El Rahman Fawzy(이집트), Gustav Brink(남아공)

○ '16.7.20.~21. 제1차 패널 구두심리 회의

* 패널 의장 변경 : Crawford Falconer(뉴질랜드)

○ '16.11.2.~3. 제2차 패널 구두심리 회의

○ '17.4.5. 패널 잠정보고서 배포(대외 비공개)

○ '17.5.10. 패널 최종보고서 배포(대외 비공개)

○ '17.11.14. 패널 최종보고서 WTO 회원국 회람(공개본)

try of Trade, try and Energy

**붙임 3** **패널 최종보고서 상세 결과**

| | 주요 쟁점 및 패널의 판단 |
|---|---|
| 구성 가격 산정 방식 | - **구성가격 산정 근거자료** : 美 상무무가 구성가격의 이윤율 산정시, '동종물품의 국내시장 판매' 물량이 소규모라는 이유로 관련 실제자료(actual data)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반덤핑협정에 위배되는지 여부 ⇒ 위반 |
| | - **동일 부류 상품의 정의** : 美 상무무가 유정용 강관(OCTG) '동일 부류 상품(same general category of products)'의 범위(유사제품(line pipe)의 범위)를 협소하게 해석한 것이 반덤핑협정에 위배되는지 여부 ⇒ 위반 |
| | - **이윤 상한** : 美 상무무가 기타 합리적인 방법으로 구성가격 이윤 산정시, 이윤 상한(profit cap)을 산정하지 않은 것이 반덤핑협정에 위배되[illegible] 여부 ⇒ 위반 |
| 관계사 거래 | - **넥스틸과 포스코의 제휴관계 판단** : 美 상무무가 양사간 제휴[illegible]ssociation)를 인정하고, 넥스틸의 포스코로부터 구매한 원재료 비용(cost) 자료와 포스코 계열사에 판매한 자료를 부인한 것이 반덤핑협정에 위배되는지 여부 ⇒ 미위반 |
| 제3국 수출 가격 | - **물량기준** : 제3국에서 충분한 규모의 판매가 이뤄진 경우에만 생산자의 '제3국 수출가격'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(viability test)이 반덤핑협정에 위배되는지 여부 ⇒ 미위반 |
| 의견 제출 기회 미제공 등 | - 아르헨티나 Tenaris社 자료 적용시 수출업체에 대한 의견제출기회 미제공, 결정내용 미통보, 관련 사항의 '핵심적 사실(essential fact)'로 미공개, 자발적 답변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 반덤핑협정에 위배되는지 여부 ⇒ 미위반 |